

## I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시행하는 이유

-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란 사업자가 전자적 방법에 의해 세금계산서를 발행·교부하고, 국세청에 전송하는 것을 말합니다.
- 동 제도는 인터넷 이용률 증가 등 사회적 환경이 성숙 되었음에도 종이세금계산서 사용에 따른 납세협력비용을 줄이기 위해 도입하는 것입니다.

## II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 사업자

- 2010년부터 법인이든 개인이든 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는 2011년부터 부과됩니다.  
(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는 2012년부터)
- 따라서 2011년초부터 미리 제도에 참여하여 발행세액공제 등 각종 혜택을 누리고 전자적 발행에 따른 업무숙달과 여러 상황에 미리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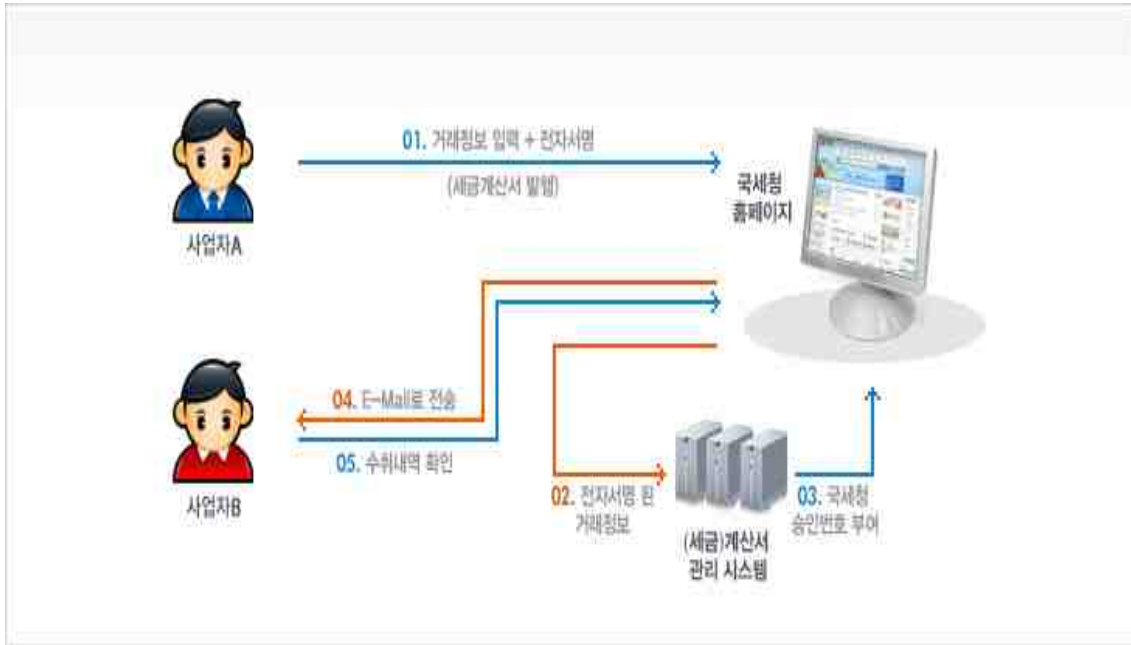
## III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하는 방법

### 1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용 홈페이지(e세로)를 통한 발행방법

별도 시스템 개발 없이 모든 사업자가 무료로 이용가능 합니다.

- 전자세금계산서 발행·교부가 필요한 경우 수시로 홈페이지 「e세로(www.esero.go.kr)」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고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거래처에 교부(e-mail)하는 방법입니다.
- 「e세로」에서는 건별발행 및 사전에 내려받은 엑셀서식에 그날 교부할 내용을 입력한 후 발행할 수 있는 일괄발행도 가능합니다.  
\* 국세청 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 그 즉시 국세청 시스템에 입력처리 되므로 별도의 전송절차가 필요 없습니다.

< 국세청 홈페이지(e-세로)를 통한 발행방법 흐름 >



\* 홈페이지 「e세로(www.esero.go.kr)」에 발행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습니다.

## 2 세무계산서 발행시스템 임대사업자 등을 통한 발행방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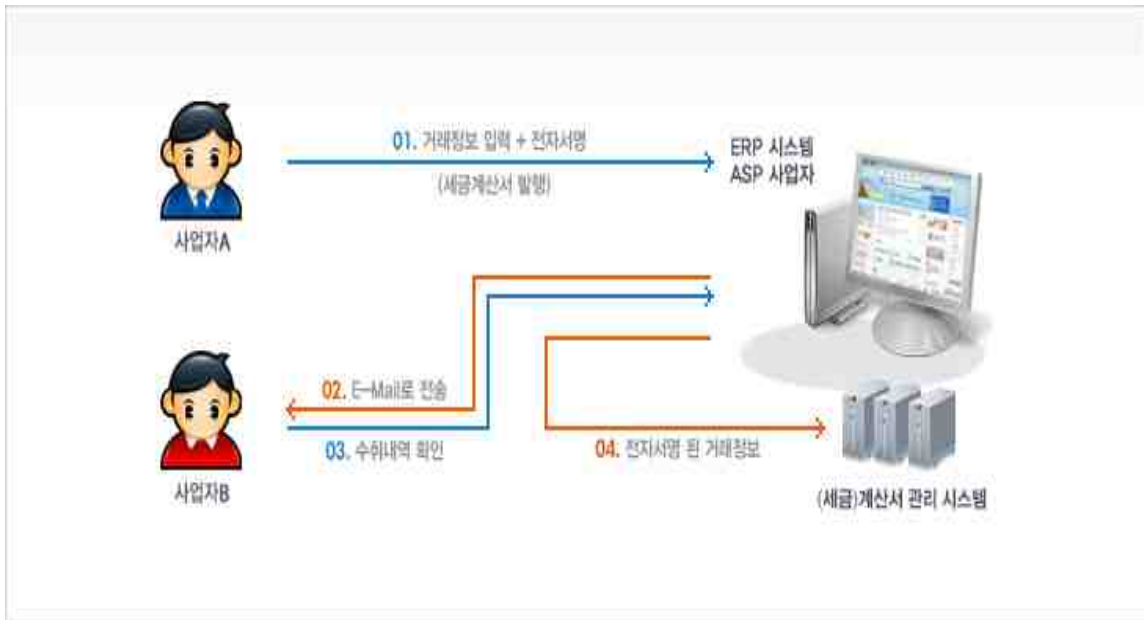
세무계산서 발행시스템 임대사업자들이 사업목적으로 구축한 시스템(ASP) 또는 대법인들이 구축한 ERP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.

- 전자세무계산서 발행시스템을 개발하여 그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을 주업으로 하는 임대사업자(ASP)의 시스템에 접속하여 발행, 국세청에 전송하는 방법(\* 건당 일정수수료 부담)과
- 대법인들이 기 구축된 ERP시스템에 전자세무계산서가 발행 및 국세청 전송까지 될 수 있도록 개발한 시스템을 이용하여 발행 및 국세청에 전송하는 방법입니다.

\* ERP 시스템 구축자들은 자신의 매출세무계산서 뿐만 아니라, 거래처가 ERP 시스템을 통해 발행해준 세무계산서도 국세청에 전송해야 합니다.

\* ERP 시스템이나 ASP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미리 「e세로(www.esero.go.kr)」에서 국세청에 등록된 대용량 연계사업자 여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.

< 세금계산서 발행시스템 임대사업자 등을 통한 발행방법 흐름 >



3 기타 발행방법

-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사업자의 경우 별도 시스템 구축없이 전화 ARS방식 [☎ 국번없이 126](\* 보안카드 세무서에 신청) 및 세금계산서 발행이 될 수 있도록 구현된 현금영수증·신용카드단말기를 이용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국세청에 전송하는 방법입니다.

< 전화ARS방식 발행 흐름 >



\* 전화 발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세무서에서 보안카드를 발급받으셔야 됩니다.

< 현금영수증 · 신용카드단말기 발행 흐름 >



\*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될 수 있도록 구현된 현금영수증·신용카드 단말기 설치에 대한 사항은 「e세로(www.esero.go.kr)」에 공지할 예정입니다.

## IV 사업자 준비사항

### 1 공인인증서

- 인터넷을 통해 발행하려는 사업자의 경우 시스템(e세로, ASP, ERP) 로그인 및 세금계산서 발행(전자서명 생성)을 위해 공인인증서(\* 법인용 범용 공인인증서, 전자세금용 공인인증서, 국세청과 이용 협의된 ASP용 공인인증서)를 준비하셔야 합니다.

### 2 거래처 e-mail

- 매출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하기 위해 매입자가 수신할 수 있는 포털사이트의 e-mail 또는 사업용으로 보유한 e-mail을 확보하여 기재하셔야 합니다.

\* 확보된 e-mail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시에 거래처 정보로 입력하여 사용하며 국세청에 별도등록 할 필요는 없습니다.

## V 이용가능한 공인인증서

### 1 공인인증서 종류

- 공인인증서는 사용자의 자격에 따라 사업자 등록번호가 입력된 법인용 공인인증서와 주민등록번호가 입력된 개인용 공인인증서가 있습니다.
- 또한, 공인인증서의 사용범위에 따라 모든 목적에 사용할 수 있는 범용공인인증서와 사용범위가 제한된 용도제한용 공인인증서로도 구분됩니다.

### 2 이용가능한 공인인증서

- 법인용 범용공인인증서를 소지하고 있는 사업자는 국세청 「e세로」를 포함한 모든 발행시스템(ERP, ASP)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
- 법인용 범용공인인증서가 없는 사업자들은 공인인증기관 또는 공인인증서 발급대행기관을 통해 「전자세금용 공인인증서」를 발급받아 전자세금계산서가 발행되는 모든 시스템에서 이용하실 수 있으며, 은행용이나 증권용 등 용도가 다른 인증서는 사용이 불가능 합니다.
  - \* ASP 사업자를 통해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는 해당 공인인증서를 관리하는 공인인증기관이 국세청에 이용가능 통보를 해야 사용 가능
  - \* 공인인증서 신청방법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「e세로」 홈페이지 「이용안내」 공인인증서 안내」 참고

## VI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와 국세청 전송기한

### 1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시기

- 종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 동일하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에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.
- 월합계로 발행하는 세금계산서 등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(세금계산서의 교부특례)에 의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교부할 수 있습니다.
-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정사유(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)가 발생한 때에 발행·교부하면 됩니다.

### 2 교부된 전자세금계산서 국세청 전송기한

-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즉시 국세청에 전송함을 원칙으로 하되,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는 국세청에 전송되어야 합니다.
  - \*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은 다음달 10일까지 해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-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에는 당초 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의 전송기한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, 수정전자세금계산서 자체의 작성연월일(또는 전자서명일)을 기준으로 전송기한이 다음달 15일로 적용됩니다.
  - \*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사유는 기재사항 착오·정정, 계약의 해제, 공급가액 변동, 재화의 환입, 내국신용장 사후개설이 있으며,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불이익(가산세)은 없습니다.

## VII 전자세금계산서 활용방법

### 1 부가가치세 신고활용

- 매출자 및 매입자는 「e세로」 홈페이지에 국세청으로 전송된 세금계산서를 확인할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시에 합계액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.
  - \* 전자세금계산서의 국세청 전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 신고·납부는 신고기한 내 하셔야 합니다.
  - \* 전자세금계산서 정보는 전송 다음 날 부터 「e세로」를 통해 조회 가능합니다.
- 전자세금계산서는 합계금액이 자동생성 되어 제공되므로 부가가치세 신고시 합계표상 개별명세표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.
  - \* 사업자로부터 수취한 종이 세금계산서는 기존대로 계속 별도의 합계표상 개별명세표를 작성 하셔야 합니다.

### 2 장부기장 등 회계연계

- 표준화된 전자세금계산서는 보관중인 개별화일 자체로 모든 시스템에서 호환이 가능하며, 홈페이지 「e세로」에서 매출·매입 자료를 엑셀형식(한번에 1,000건 미만)으로 내려 받아 회사의 회계시스템 등에 연계시킬 수 있습니다.
  - \* 매출·매입이 100% 전자세금계산서 발행·수취인 경우 매입·매출장기능

## VIII 사업자 유의사항

### 1 대용량 연계사업자 사전확인



- 매출자는 국세청 「e세로」 이외의 발행·임대시스템(ASP, ERP)을 이용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「e세로(www.esero.go.kr)」에서 “대용량 전송사업자로 등록”된 업체인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.
- 대용량 전송사업자로 등록된 업체를 통해 생성된 전자세금계산서만이 표준화된 전자세금계산서로, 등록업체만이 국세청에 전자세금계산서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.

## 2 교부완료 시점

- 매출자가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완료하는 시기는 교부의 목적물이 되는 전자세금계산서 파일이 수신자가 지정한 수신함(e-mail 함)에 입력된 때입니다.
- 교부가 완료된 후(수신함에 입력된 후) 매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기재사항 등을 확인한 결과 잘못 기재된 사항 등이 있으면 매출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면 됩니다.

## 3 교부즉시 국세청 전송

- 전자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교부시기에 발행하고 국세청에 전송해야 하므로,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시스템 임대 서비스(ASP)를 운영하는 사업자 중 전자세금계산서를 다음달 15일에 한꺼번에 전송한다고 광고하는 업체를 선택하는 경우 매출·매입자 모두에게 피해가 갈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

# IX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법령

## 1 교부의무 대상자



- 영세사업자의 전자적 발행부담 완화 차원에서 1년간 전자 또는 종이 세금계산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.
- 다만, 2011년부터 모든 법인사업자는 매입자가 개인 일반·간이와는 상관없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. (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는 2012년부터)

## 2 미전송 및 지연전송 가산세

- 공급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는 하였으나, 교부일(시행령 제54조 제1항 각호의 경우 발행일) 다음달 15일 이내 전송하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공급가액에 대하여 0.3%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. (법인사업자 2011년~2012년, 일정규모 이상 개인사업자 2012년~2013년)
  - 다만, 공급시기를 포함하는 과세기간 말 다음달 15일(1.15일, 7.15일) 이내에 전송하는 경우에는 0.1%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. (법인사업자 2011년~2012년, 일정규모 이상 개인사업자 2012년~2013년)
- \* 예 : 작성연월일 1.15일인 경우 2.15일 이내에 전송한 경우 가산세가 없으나, 2.16일에서~7.15일 이내 전송된 경우에는 0.1%가 부과됩니다. 7.16일 이후에 전송된 경우에는 0.3% 가산세가 부과됩니다.

## 3 교부 및 전송으로 인한 혜택

- 매출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국세청에 전송하게 되면 건당 100원(연간 한도 100만원)의 교부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- 국세청에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는 별도로 출력하여 보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

- \* 제3자(국가기관, 금융기관 등)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사실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 「e세로」에서 “제3자 확인 기능”을 통해 거래사실을 확인시킬 수 있습니다.
- 전자세금계산서로 발행하고 국세청에 전송된 분에 대해서는 「전자세금계산서 발행분」란에 합계액만 기재하고, 거래처별 개별명세표 작성하실 필요가 없습니다.
  - \* 국세청에 전송되지 않은 전자세금계산서와 종이세금계산서는 「전자세금계산서 외의 발행분」란에 합계액과 거래처별 개별명세 기재
  - \* 합계표 기재방법은 「e세로」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